

신주 발행 공고(정정)

당사는 상법 제 416 조에 의거, 2024 년 05 월 29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 및 2024 년 06 월 14 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- 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식 19,000,000 주(1 주당 액면가액 500 원)
- 신주의 발행방법: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
- 신주의 발행가액: 할인율을 25%로 하여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 165 조의 6(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) 및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제 5-15 조의 2(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)에 의거하여, 1 차 발행가액과 2 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,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%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.
- 신주의 배정기준일(주주확정일): 2024 년 07 월 10 일
- 신주의 배정방법:
 - 구주주 청약: "본 주식"의 100%인 19,000,000 주는 신주배정기준일(2024 년 07 월 10 일, 예정) 18 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("주주배정분"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,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합니다)을 곱하여 산정한 배정주식(1 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합니다)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. 단,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 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- 초과 청약: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, 실권주를 구주주(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)가 초과청약(초과청약비율: 배정신주 1 주당 0.2 주)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, 1 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. (단,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% 배정)
 -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,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공모 청약: "구주주"에 대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하여는 유진투자증권(주)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 9 조 제 2 항 제 3 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%를 배정하고,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 9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(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 년 6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합니다)에 공모주식의 25%를 배정합니다. 나머지 65%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.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%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%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%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. 다만,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,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.
 -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"총 청약물량"을 "일반공모 배정분"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.
 - "총 청약물량"이 "일반공모 배정분"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,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5 사 6 입을 원칙으로 안분비례하여 배정하되, 그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.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수량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 주씩 우선 배정하되, 동 순위 최대수량 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(주)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.
 -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유진투자증권(주)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.
 - 유진투자증권(주)는 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 제 9 조제 2 항제 3 호 내지 제 6 호에 의거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수 50,000 주 이하(액면가 500 원 기준)이거나,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,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청약일
 - 구주주: 2024 년 09 월 05 일부터 2024 년 09 월 06 일까지(2 영업일간)
 - 일반공모: 2024 년 09 월 10 일부터 2024 년 09 월 11 일까지(2 영업일간)
- 주금납입일: 2024 년 09 월 13 일
-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
 - 당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 165 조 제 3 항 및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 5-19 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, 유진투자증권(주)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위탁하기로 합니다.
 -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(2019 년 09 월 16 일)에 따라 실물 증서로 발행되지 않습니다.
 - 당사는 (i)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하여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(기존 "명부주주" 보유주식)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리인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되며, (ii) 일반주주(기존 "실질주주")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각 계좌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. 단, 특별계좌 보유자(기존 "명부주주")가 명의개서대리인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대행예약 및 상장을 신청할 경우, 동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해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가 가능합니다.
 - 당사는 일반주주(기존 "실질주주")에게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약 방식으로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하고, 최소한 5 거래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장하여야 합니다.
 -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주식에 관한 청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일반주주(기존 "실질주주"): 장내 · 외 거래를 통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계좌 대체의 방식으로 양도하며, 유진투자증권(주)의 본 · 지점 및 예약자를 통하여 청약합니다.
특별계좌 보유자(기존 "명부주주"): 명의개서대리인의 '특별계좌'에서 '일반 전자등록계좌(증권회사 계좌)'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 청약 참여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합니다.
 - 신주인수권증서의 '일반 전자등록계좌(증권회사 계좌)'로 이전 없이 유진투자증권(주)의 본 · 지점에서 직접 청약을 합니다. 다만,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'특별계좌'에서 '일반 전자등록계좌(증권회사 계좌)'로 신주인수권증서를 이전 신청한 후에 합니다.
- 청약증거금: 청약금액의 100%로 합니다.
- 청약장소:
 - 구주주 중 일반주주(기존 "실질주주"): 위탁증권사 및 유진투자증권(주) 본 · 지점
 -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(기존 "명부주주"): 유진투자증권(주) 본 · 지점
 - 일반공모 청약자: 유진투자증권(주) 본 · 지점
- 주금납입처: 신한은행 광고기업영업부
- 배당기산일: 2024 년 01 월 01 일
- 기타사항
 -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.
 - 상기사항 포함하여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.
 - 본 신주발행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의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신주발행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

상법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17 조에 의거,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신주배정기준일(주주확정일): 2024 년 07 월 10 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: 2024 년 07 월 11 일부터 2024 년 07 월 13 일까지

2024 년 05 월 29 일
2024 년 06 월 14 일(정정)

디엑스앤브이엑스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73, 1003
대표이사 이 용 구

명의개서대리인
국민은행 증권대행부